

현장실습 협약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실습기관 () 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국제대학교 실습생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, 국제대학교 (유아교육)과(이하“병”이라 한다)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현장실습 기간, 시간 및 장소) ① 실습 기간은 2022. . . . ~ 2022. . . . (6주)으로 한다.
② 실습 시간은 “갑”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8시간(주 40시간)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실습 장소는 “갑”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, 실습생의 보건·위생 및 산업재해 등으로 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한다.

제3조(실습지원비) “갑”은 “병”과 협의하여 “을”에게 원활한 실습수행을 위해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.

※ 단, 자격실습 관련 현장실습지원비는 협약에 의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- ① 지급금액 : 금 0원 (6주 기준)
- ② 지급방법 : (예정)
- ③ 지급일 : (예정)

제4조(현장실습 방법) 현장실습은 “갑”이 “병”과 협의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.

제5조(대학의 의무) “병”은 현장실습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안전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, “을”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적절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.

제6조(실습생의 의무)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① 현장실습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.
- ② 현장실습 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.
- ③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.
- ④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“갑”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
제7조(실습기관의 의무) “갑”은 현장실습이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에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한다.

- ① “을”의 전공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고, 다양하고 폭넓은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.
- ②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, 공구, 재료 등을 제공한다.
- ③ 현장실습을 위한 관리자를 지정하여, “을”의 실습을 지도한다.

제8조(보건·위생과 산업재해 예방) “갑”은 “을”의 보건·위생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, 실습에 필요한 기계·기구·설비 등의 사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한다.

제9조(실습학점)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, 정해진 실습학점을 인정받는다.

제10조(현장실습의 평가) “갑”은 “병”이 정한 기준에 따라 “을”의 출근상황과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, 그 결과를 “병”에게 통보한다.

제11조 (보험가입) “병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이와 별도로 “갑”은 실습생의 상해에 대비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


제12조(현장실습 협약의 해지) “갑”과 “을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 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타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, 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월 일

“갑”	“을”	“병”
기 관 명 :	기 관 명 : 국 제 대 학 교	기 관 명 : 국 제 대 학 교
사업자번호 :	학 과 명 : 유 아 교 육 과	주 소 : 경 기 도 평 택 시 장 안 옷 길 5 6
대 표 자 : 인	학 생 명 : 인	총 장 : 임 지 원 인

연번	학번	학생명	연번	학번	학생명
1		인	4		인
2		인	5		인
3		인	6		인